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22 일

주) 본 투자설명서는 2009년 04월 30일자로 최초 제출된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액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2%이내	1.1620	1.0000	0.8700	2.0409	325	542	770	1,261	2,7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없음	1.6620	1.5000	1.2100	2.4895	255	512	776	1,308	2,856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320	0.3700	0.5800	1.4112	194	345	503	845	1,8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0.6620	0.5000	0.7500	1.5412	158	324	498	873	1,9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없음	0.6620	0.5000	-	1.5411	158	324	498	873	1,987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 형과 종류 C1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10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4 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5) ‘총 보수·비용’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를 포함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0.8275%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024/12/01 ~ 2025/11/30	최근 2 년 2023/12/01 ~ 2025/11/30	최근 3 년 2022/12/01 ~ 2025/11/30	최근 5 년 2020/12/01 ~ 2025/11/30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07-05-17	9.47	11.64	10.10	7.55	6.18
	참조지수	2007-05-17	20.46	20.90	17.72	12.36	6.83
	수익률 변동성	2007-05-17	11.52	10.64	10.59	11.76	15.50

(주 1) 참조지수 : 25% S&P 500 Index + 25% MSCI Europe Index (EUR) + 25% TOPIX + 25%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x Korea (hedged to the KRW)

(주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연평균 하였으며, 상기 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클래스) 중 일부 종류(클래스)의 수익률을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026년 8월말 기준)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재간접형-해외투자(60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기구 수 (개)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안중현	1970	본부장	30	74,145	21.01	17.35	21.01	17.35	6년 7개월
(주 1)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 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금손실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모투자신탁을 통한 당해 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위험 관리 전략 세부내용					
		환헤지여부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환헤지 방법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목표 환헤지비율	모투자신탁을 통한 당해 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율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최고 9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으며, 환위험 관리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 증권 가격변동 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제상 과세 위험	모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또는 심천거래소 등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 당국의 과세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적격외국인투자자(QFI) 관련 과세정책 또는 모투자신탁의 중국 본토 관련 증권 투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현행 중국 세법, 관련 규정 및 관행은 중국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조세채무가 증가되면 이는 모투자신탁의 가치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격외국인투 자자 제도 관련 위험	중국의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적격외국인투자자(QFI) 지위를 취득한 기관을 통해서 중국 A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 QFI 관련 규정은 중국 A 주식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모투자신탁의 중국 내 투자 성과 및 투자목적 달성 여부는 이러한 QFI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투자제한, 최소투자보유기간 및 원금과 수익의 본국 송금 요건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QFI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제한된 투자기회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을 충분히 실행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결정에 의해 QFI 제도 및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모투자신탁의 중국 내 투자 관련 기관의 QFI 자격이 제한 또는 취소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중국내 투자가 곤란하거나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div>특정 투자수단 관련 위험</div> <div>모투자신탁은 적격외국인투자자(QFI) 자격, 후강통 제도 및 기타 적격 수단 등, 현행 중국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단을 통하여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투자수단은 중국 당국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 위험성은 모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div>		
	<div>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div> <div>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div>		
	<div>해지위험</div> <div>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div>		
	<div>증권대차 거래 위험</div> <div>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div>		
매입 방법	<div>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div>	환매 방법	<div>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8 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div>
	<div>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div>		<div>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div>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div>- 당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div> <div>-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div>	
	공시장소	<div>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div>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div>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전환절차 및 방법	<div>동일 투자신탁내 전환: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에 한합니다.</div>		
	<div>-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div> <div>-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div> <div>-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div> <div>-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div>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피델리티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3-0901)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idelity.co.kr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관련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60 조 좌
효력발생일	2026 년 10 월 29 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7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0개월 이전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3년 4개월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판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0개월 이전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3년 4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기타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채감 (C1~C5)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RS)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계열사 자금(N)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3. 모집예정금액	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2
5. 인수에 관한 사항	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4. 집합투자업자	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9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8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33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37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4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5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8
1. 재무정보	5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6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65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7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7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77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7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81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8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86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8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89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90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90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6908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69085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B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690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996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996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99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996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B4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W6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AB7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936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BW6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B96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B962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P3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B96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B96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93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AK9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9369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60,000,000,000,000좌

-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69083
수수료선택-오프라인 (A)	69085
수수료선택-온라인 (A-e)	AB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690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996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996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99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996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B4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W6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AB7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9369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BW6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B96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B962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P3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B96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B96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93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AK9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9369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5.17	- 최초설정
2009.05.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피델리티 월드 Big 4 종류명 <u>주식투자신탁 - 자</u> →피델리티 월드 Big 4 <u>증권 자투자신탁 (주식)</u>)
2010.03.16	- 펀드 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해외투자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제2영업일(T+1) → 제3영업일(T+2) - 자본시장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단서조항 추가, 과세 문구 변경,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및 손실 상계 방안 추가 등
2010.05.03	- 종류 E 판매보수율 인하 (1.8% → 1.5%)
2011.01.17	- 체감식으로 판매보수율 인하 및 그에 따른 종류 신설, 종류 명칭 변경 등 (종류 A, <u>종류 E</u> , 종류 I, 종류 CP, 종류 N → 종류 A, <u>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u> , 종류 I, 종류 CP, 종류 N)
2012.07.06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해외주식 등→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및 보수 인하 등 관련 사항 변경 - 투자신탁 명칭 변경(피델리티 월드Big4 증권 자투자신탁 (<u>주식</u>)→ 피델리티 월드Big4 증권 자투자신탁 (<u>주식-재간접형</u>)) - 종류 A-e, 종류 C-e 및 종류 C-w 신설
2013.08.30	- 종류 F 신설 - 종류 I 가입자격 변경
2014.02.28	- 종류 S 신설
2015.03.31	- 중국 본토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한 기재사항 추가
2015.06.19	- 종류 CP 환매수수료 면제: 2015년 06월 22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
2015.12.11	- 종류 PRS, 종류 PRS-e, 종류 S-PRS, 및 종류 S-I 신설 - 환매수수료 면제: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
2016.02.29	- 과세특례 등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반영
2017.09.04	- 종류 CG 및 종류 CP-e 신설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일괄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양식 변경 등)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1.05.28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 (연 0.025% → 연 0.022%)
2022.08.11	-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2022년 7월자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2022년 7월 14일자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변경됨 (피델리티펀드 - 재팬어드밴티지펀드(Fidelity Funds - Japan <u>Advantage</u> Fund) → 피델리티펀드 - 재팬 <u>밸류</u> 펀드(Fidelity Funds - Japan <u>Value</u> Fund))
2026.05.20	-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반영 (2026년 4월자 피델리티펀드의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피델리티펀드 - 미국성장펀드(Fidelity Funds - <u>American Growth</u> Fund) → 피델리티펀드 - 미국 <u>주식</u> 펀드(Fidelity Funds - <u>US Equity</u> Fund)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가.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제외한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관련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및 내용

해당 펀드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90년 12월 31일
회사주소	8 Marina View, # 27-01,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관련업무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제외)

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및 내용

해당 펀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주소	18/F, Three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업무위탁범위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6년 8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재간접형-해외투자(60형))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중현	1970	본부장	30	74,145	21.01	17.35	21.01	17.35	[운용경력년수] 6년 7개월 [주요 경력] 2020.1.21 이후: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3.8 - 2020.1.20: 피델리티자산운용, 마케팅 2013.4 - 2013.8: 삼성증권, 포트폴리오 컨설팅 2007.6 - 2013.3: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마케팅 1997.3 - 2006.1: 씨티은행, 투자상품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재간접형-해외투자(60형))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학력 및 기타 이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여러 모투자신탁 중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제2부, 5. 다.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태우	2007.05~2008.03
장성문	2008.03~2015.05
김미영	2015.05~2017.09.14
김세희	2017.09.15~2017.11.23
임영민	2017.11.24~2018.04.26
정은주	2018.04.27~2020.01.20
안종현	2020.01.21 이후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2025년 11월말 기준)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개)	규모 (USD, 백만)	
Sam Thomas	1992	포트폴리오 매니저	3	2,109.12	경력: 2025 -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델리티 아메리칸 전략 2024 -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 US 주식 코어 풀 전략 2022-2024 - 포트폴리오 매니저, 기관용 코어 US 위탁 운용 2021-2024 - 애널리스트, US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 2019-2021 - 애널리스트, US 유럽 화학 부문 2015-2019 - 애널리스트, US 리츠(REITs) 및 주택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개)	규모 (USD, 백만)	
					<p>건설업체 부문</p> <p>학력 및 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 보유 Mphys Physics, University of Oxford</p>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2026년 8월말 기준)

(2026.11.01 이후)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개)	규모 (USD, 백만)	
George Gould	1995	포트폴리오 매니저	2	533.19	<p>경력:</p> <p>2026- 포트폴리오 매니저, FAST Europe Fund, Fidelity Europe Stock Mother Fund</p> <p>2026-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델리티 유럽 다이나믹 그로스 전략 부문</p> <p>2024-2026 포트폴리오 매니저, Global Cultural Advantage Pilot Fund</p> <p>2023-2024 주식 애널리스트, 글로벌 기업 변화 및 문화 부문, Fidelity International</p> <p>2021-2023 주식 애널리스트, US 및 유럽 공매도(Shorting) 부문, Fidelity International</p> <p>2020-2022 주식 애널리스트, 유럽 은행 부문, Fidelity International</p> <p>2017-2019 주식부문 애널리스트, 유럽 에너지 및 에너지 서비스 부문, Fidelity International</p> <p>학력 및 자격: BA Physics, University of Cambridge CFA 자격 보유</p>

(2026.10.31 까지)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개)	규모 (USD, 백만)	
Fabio Riccelli	1977	포트폴리오 매니저	3	2,055.98	<p>경력:</p> <p>2004- 포트폴리오 매니저, Fidelity Intl, 런던</p> <p>2004 포트폴리오 매니저보, Fidelity Intl, 런던</p> <p>1998-2004 애널리스트, Fidelity International Ltd., 런던</p> <p>학력 및 자격:</p>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개)	규모 (USD, 백만)	
					University of Manchester 에서 학사학위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

(2025년 11월말 기준)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개)	규모 (USD, 백만)	
Min Zeng	1987	포트폴리오 매니저	5	4,199.77	경력: 2022- 포트폴리오 매니저, FIL Investments (Japan) Limited, 도쿄 2019-2022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 FIL Investments (Japan) Limited, 도쿄 2011-2022 Research Analyst, FIL Investments (Japan) Limited, 도쿄 학력 및 자격: B.C. McGill University, Canada

※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및 운용경력년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의 운용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가 중복 또는 과대 산정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가 특정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로만 산입되며 모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중복하여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
정보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실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보다 적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1)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관련업무(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제외)를
담당하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2025년 11월말 기준)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개)	규모 (USD, 백만)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개)	규모 (USD, 백만)	
앤서니 쉬롬 (Anthony Srom)	1976	포트폴리오 매니저	5	3,461.50	주요 경력: 2008- 현재 투자분석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FIL Limited, 싱가포르 2006- 2008 투자분석가, FIL Limited, 싱가포르 학력 및 자격: CFA Charterholder Bond University, 학사, 호주

- ※ 동종 유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및 운용경력년수는 해외위탁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복수의 운용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가 중복 또는 과대 산정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가 특정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로만 산입되며 모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중복하여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 정보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실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보다 적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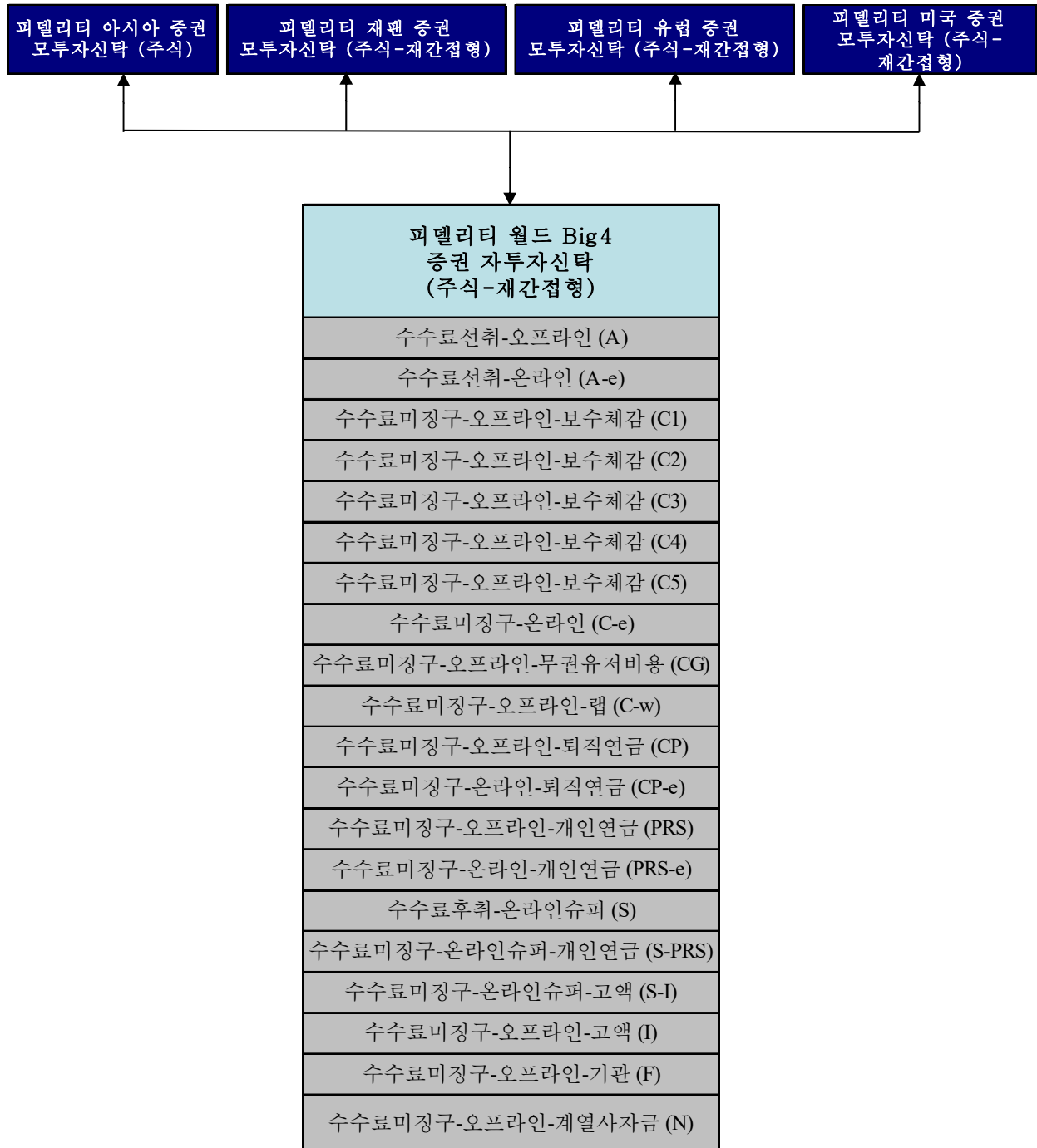
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2부, 9. 가, (4) 위험관리의 내용 중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p>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p> <p>*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3년 4개월</p>
	수수료 후취	<p>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수수료 미징구(C)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p> <p>*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3년 4개월</p>
판매 경로	온라인 (e)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오프라인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온라인 슈퍼(S)	<p>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기타	보수체감 (C1~C5)	<p>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p>
	무권유 저비용(G)	<p>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개인연금 (PRS)	<p>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퇴직연금 (C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고액 (I)	<p>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기관 (F)	<p>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랩 (W)	<p>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계열사	<p>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자금(N)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11. 매입의 내용 중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설정일

구분	최초설정일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2007.05.1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4.05.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2007.05.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2011.01.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2011.01.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2011.01.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2011.05.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5.08.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2015.05.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2015.01.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2017.0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2018.03.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2018.07.0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4.05.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2016.01.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2009.10.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

(2) 기타

기타 이 투자신탁의 각 종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에 관한 사항: 제1부 및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 수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Fidelity Funds - US Equity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 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3. 주요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국가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명칭: 피델리티 유럽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Fidelity Funds - European Dynamic Growth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영위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3. 주요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국가위험, 신용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명칭: 피델리티 재팬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Fidelity Funds - Japan Value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회사의 주식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피델리티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회사의 주식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3. 주요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국가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명칭: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및 한국 제외)의 기업 주식(이하 “아시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자산을 아시아 관련 주식(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서 정의됨)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70 % 수준
3. 주요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라.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피델리티펀드의 하위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회사 (Umbrella Type Fund)로서, 피델리티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자산은 각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 피델리티펀드의 정관에 따라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가능한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idelity.co.kr)와 외국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구분	주요내용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Fidelity Funds - US Equity Fund) - 종류(클래스): A-ACC-USD
펀드설정일	- 1997년 7월 7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펀드 규모	- USD 857 백만 (2025년 11월말 현재)
외국집합투자업자(외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알엘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함.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적극적 종목 선정 - 참조지수에 제약 받지 않고, 투자매력이 높은 종목을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 선호 - 기업이익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 -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발굴
주요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 자산의 최소 70%(그리고 보통 75%) - 부동산투자신탁(REITs): 최대 10% - 단기금융상품: 최대 20%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5% 미만
주요 투자위험 (2026년 4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p>일반위험: 적극적 운용 위험, 자산 배분 위험, 벤치마크 제공 위험, 중국 위험 (QFI 지위, 상하이 및 선전 홍콩 증권시장 간 상호주식투자 프로그램, 중국본토은행간채권시장(CIBM) 및 채권교차매매제도(Bond Connect), 차이넥스트(ChiNext)시장 및/또는 과창판(“과창판”)과 관련된 위험, 덤섬 채권, 역내 및 역외 인민폐(런민비), 신용등급, 도시투자채권, 중국 조세 조항), 코코본드 위험, 상품 위험, 집중 위험, 전환증권 위험(CONVERTIBLE SECURITIES RISK), 거래상대방 및 담보위험, 신용위험, 환율위험, 파생상품 위험 (장내파생상품, 미결제 장외파생상품, 결제 장외파생상품), 부실증권 위험, 이머징마켓 위험, 주식 위험, 헤지 위험, 하이일드 위험, 금리 위험, 투자펀드 위험, 레버리지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부동산위험, 러시아 위험, 자산유동화증권(SECURITISATION) 위험, 매도 포지션 위험, 중소형 자본 주식 위험, 국채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위험, 지속가능투자위험, 목표일 펀드 위험, 조세위험, 기술 및 혁신 위험</p>

구분	주요내용		
	<p>기타 투자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 •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는 가) 해당 하위펀드 또는 해당 클래스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나) 어느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순자산가치가 미화50,000,000달러 혹은 그 상당액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하는 경우 해지될 수 있음. <p>–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p> <p>특수위험:</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 부동산 </td></tr> </table> <p>–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 부동산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구분	주요내용
명칭	<p>–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p> <p>–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Fidelity Funds - European Dynamic Growth Fund)</p> <p>– 종류(클래스): A-ACC-Euro</p>
펀드설정일	– 2001년 2월 9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펀드 규모	– EUR 1,250 백만 (2025년 11월말 현재)
외국집합투자업자(외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알엘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투자목적	<p>–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영위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p> <p>–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p>
주요투자전략	<p>–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종목을 선정함</p> <p>– 통상 시가총액이 EUR10억에서 EUR100억인 중형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함</p> <p>– 저평가된 성장 기업들에 우선적 투자함</p> <p>– 경기순환적 성장세가 아닌 기업들의 구조적 성장 여부를 점검함</p> <p>–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창출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함</p> <p>– 유럽 주식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리스크 줄이고 장기 안정적 수익률 추구함</p>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 (2026년 4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p>–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p> <p>일반위험: 적극적 운용 위험, 자산 배분 위험, 벤치마크 제공 위험, 중국 위험 (QFI 지위, 상하이 및 선전 홍콩 증권시장 간 상호주식투자 프로그램, 중국본토은행간채권시장(CIBM) 및 채권교차매매제도(Bond Connect), 차이넥스트(ChiNext)시장 및/또는 과창판(“과창판”)과 관련된 위험, 덤섬 채권, 역내 및 역외 인민폐(런민비), 신용등급, 도시투자채권, 중국 조세 조항), 코코본드 위험, 상품 위험, 집중 위험, 전환증권 위험(CONVERTIBLE SECURITIES RISK), 거래상대방 및 담보위험, 신용위험, 환율위험, 파생상품 위험 (장내파생상품, 미결제 장외파생상품, 결제 장외파생상품), 부실증권 위험, 이머징마켓 위험, 주식 위험, 헤지 위험, 하이일드 위험, 금리 위험, 투자펀드 위험, 레버리지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부동산위험, 러시아 위험, 자산유동화증권(SECURITISATION) 위험, 매도 포지션 위험, 중소형 자본 주식 위험, 국채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위험, 지속가능투자위험, 목표일 펀드 위험, 조세위험, 기술 및 혁신 위험</p> <p>기타 투자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 •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는 가) 해당 하위펀드 또는 해당 클래스의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나) 어느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순자산가치가 미화50,000,000달러 혹은 그 상당액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하는 경우 해지될 수 있음. <p>–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p> <p>특수위험:</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중소형주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td></tr> </table> <p>–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중소형주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 파생상품 위험 • 주식 위험 • 헤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 시장 위험 • 운영 위험 • 중소형주 위험 • 지속가능 투자 위험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 :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구분	주요내용
명칭	<p>–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p> <p>–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Fidelity Funds - Japan Value Fund).</p> <p>– 종류: 클래스 A-ACC-JPY</p>
펀드설정일	– 2003년 1월 30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03일
펀드 규모	– JPY 370,057 백만 (2025년 11월말 현재)

구분	주요내용		
외국집합투자업자(외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알엘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투자목적	-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회사의 주식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 피델리티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회사의 주식증권에 주로 투자함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펀드멘탈에 기반을 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과 광범위한 기업방문을 통해 종목을 선별 - 피델리티 일본 주식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 -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향후 기업 가치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 - 핵심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 이하의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이익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으로 구성 - 향후 수년간 견고한 판매와 이익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호		
주요 투자위험 (2026년 4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p>-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p> <p>일반위험: 적극적 운용 위험, 자산 배분 위험, 벤치마크 제공 위험, 중국 위험 (QFI 지위, 상하이 및 선전 홍콩 증권시장 간 상호주식투자 프로그램, 중국본토은행간채권시장(CIBM) 및 채권교차매매제도(Bond Connect), 차이넥스트(ChiNext)시장 및/또는 과창판(“과창판”)과 관련된 위험, 담십 채권, 역내 및 역외 인민폐(런민비), 신용등급, 도시투자채권, 중국 조세 조항), 코코본드 위험, 상품 위험, 집중 위험, 전환증권 위험(CONVERTIBLE SECURITIES RISK), 거래상대방 및 담보위험, 신용위험, 환율위험, 파생상품 위험 (장내파생상품, 미결제 장외파생상품, 결제 장외파생상품), 부실증권 위험, 이머징마켓 위험, 주식 위험, 헤지 위험, 하이일드 위험, 금리 위험, 투자펀드 위험, 레버리지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부동산위험, 러시아 위험, 자산유동화증권(SECURITISATION) 위험, 매도 포지션 위험, 중소형 자본 주식 위험, 국채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위험, 지속가능투자위험, 목표일 펀드 위험, 조세위험, 기술 및 혁신 위험</p> <p>기타 투자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 •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는 가) 해당 하위펀드 또는 해당 클래스의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나) 어느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순자산가치가 미화50,000,000달러 혹은 그 상당액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하는 경우 해지될 수 있음. <p>-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p> <p>특수위험:</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 위험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 위험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위험 • 거래상대방 및 담보 위험 • 통화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지 위험 • 투자펀드 위험 • 유동성 위험 		

구분	주요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83 241 1398 344"> <tr> <td data-bbox="483 241 943 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 위험 주식 위험 </td><td data-bbox="943 241 1398 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지속가능 투자 위험 </td></tr> </table> <p data-bbox="443 344 1433 418">-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 위험 주식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지속가능 투자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 위험 주식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지속가능 투자 위험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여러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각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여러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하며,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경우 해외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각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 또는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고자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각 모투자신탁별로 상이합니다. 환헤지를 수행하는 여러 모투자신탁을 통하여 당해 투자신탁이 목표하는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헤지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아래 명시된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합니다.

1.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합니다.
2.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 90%이하로 합니다.
3.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합니다.
4.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하로 합니다.
5. 제6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위 1호 내지 4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6.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7.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1).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아래 명시된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가)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가.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Fidelity Funds - US Equity Fund)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하며, 위 1)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3)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4)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5)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6) 외국주식		이 투자신탁이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 중 일부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주식 또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과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 취득하게 된 외국주식
7)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8)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합니다.</p>
<p>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p>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변경일로부터 1 월간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두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p>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p> <p>가.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Fidelity Funds - European Dynamic Growth)</p>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p>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p>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수익증권등”이라 하며, 위 1)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3)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4)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5)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6) 외국주식		이 투자신탁이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 중 일부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주식 또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과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 취득하게 된 외국주식
7)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8)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합니다.</p>
<p>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p>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변경일로부터 1 월간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집합투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가.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 (Fidelity Funds - Japan Value Fund).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하며, 위 1)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3)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4)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5)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6) 외국주식		이 투자신탁이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 중 일부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주식 또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과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 취득하게 된 외국주식
7)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8)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변경일로부터 1 월간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라)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주식”이라 합니다)
2)아시아관련 주식	60% 이상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및 한국 제외)의 기업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제 1 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아시아 관련 주식”이라 합니다)
3) 외국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제 4 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채권”이라 합니다)
4) 외국자산 유동화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자산유동화채권”이라 합니다)
5)외국어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어음”이라 합니다)
6) 국내외의 금리스왑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8)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9)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외국 사모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5%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10)외국파생결합증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파생결합증권”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1)증권대여 ^{주1}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2)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3)증권차입 ^{주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4)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1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 가. (ETF 에 해당하는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을 차입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9)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모두투자신탁

- 피델리티 미국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i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나.(2).(가)의 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날로부터 1월간 나.(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사업의 수익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파생결합증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과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과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집합투자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가.(2)(라)의 표의 11)호 내지 13)호의 투자한도 및 나.(2).(가)의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두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2).(가).2.호의 본문 및 제5호부터 제8호 가목 및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여러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상 1)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그리고 4)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각 자산총액의 약 25%정도를 투자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매월 또는 필요한 경우 그보다 더 잦은 주기로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따라 위 모투자신탁간 25:25:25:25 비율의 자산배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각 모투자신탁은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적극적 종목 선정
- 참조지수에 제약 받지 않고, 투자매력이 높은 종목을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 선호
- 기업이익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
-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발굴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종목선정
- 통상 시가총액이 EUR10억에서 EUR100억인 중형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함
- 저평가된 성장 기업들에 우선적 투자
- 경기순환적 성장세가 아닌 기업들의 구조적 성장 여부 점검
-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창출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발굴
- 유럽 주식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리스크 줄이고 장기 안정적 수익률 추구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이 주로 투자

- 펀더멘털에 기반을 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과 광범위한 기업방문을 통해 종목을 선별
- 피델리티 일본 주식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
-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향후 기업 가치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
- 핵심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 이하의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이익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으로 구성
- 향후 수년간 견고한 판매와 이익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호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상기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및 한국 제외)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주 1)}

- 펀더멘탈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으로 운용
- 주식선정은 독립적인 고유 리서치 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
- 우수한 사업모델, 업종과 그 밖에 시장의 예상치 대비 평균 이상의 이익성장률, 자본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기자본이익률 기록 및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기업을 선호하며, 기업 경영진의 실행능력도 평가
- 2년에서 3년 정도의 투자주기를 가지고 다소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운영
- 역발상 투자 및 가치주를 다소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매우 중립적인 투자 스타일을 보유

주 1)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적격 외국인투자자(Qualified Foreign Investor: QFI)) 등을 부여 받았으며, 이와 같은 QF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쿼터) 내에서 투자할 것임. 다만, QFI 제도를 통하여 중국 본토관련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 내외에서 관리됨. 또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3)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조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 25% S&P 500 Index + 25% MSCI Europe Index (EUR) + 25% TOPIX + 25%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x Korea (hedged to the KRW)

* S&P 500 Total Return Index: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가 작성하여 발표한 미국 지역 전반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

* MSCI Europe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유럽 지역 지수

* MSCI Europe Index (EUR): 유로화 기준으로 작성된 MSCI Europe Index

* TOPIX : 일본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가중지수

*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x Korea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수이며 한국 및 일본 지역을 제외함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모투자신탁은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선도환계약을 이용하여 투자신탁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을 통한 당해 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율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최고 9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으며, 환위험 관리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부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부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시장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전세계의 다양한 성장동력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영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과 일본은 세계 경제의 주요 시장입니다.”

관련 국가 현황

※ 다음은 관련 국가 전부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GDP	29 조 3,749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7% (2024 년 11 월)
실업률	4.2% (2024 년 11 월)	화폐	미국달러 (USD)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8 년 1 분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부동산(13.4%), 전문서비스(12.1%), 도소매(11.8%), 제조업(11.7%), 교육/의료(8.4%), 정보통신(4.8%) 등 		

영국

GDP	3 조 5,514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6% (2024 년 11 월)
실업률	4.3% (2024 년 10 월)	화폐	파운드(GBP)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 산업: 0.6%, 2 차 산업: 20.2%, 3 차 산업: 79.2% (2017 년) 		

독일

GDP	4 조 6,443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2024 년 11 월)
실업률	3.4% (2024 년 11 월)	화폐	유로 (EURO)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수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프랑스

GDP	3 조 1,488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1.3% (2024 년 11 월)
실업률	7.6% (2024 년 10 월)	화폐	유로 (EURO)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1.6%, 공업 13.7%, 건설업 5.1%, 서비스 79.6% 		

일본

GDP	4 조 968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9% (2024 년 11 월)
실업률	2.5% (2024 년 11 월)	화폐	엔 (JPY)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6 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 산업 1.2%, 2 차 산업 26.8%, 3 차 산업 72.0% 		

중국

GDP	18 조 88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0.2% (2024 년 11 월)
실업률	3.96% (2021 년 12 월)	화폐	위안화 (CNY)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 차산업 7.9%, 제 2 차산업 40.5%, 제 3 차산업 51.6% (2017 년 4 분기 기준) 주요 수출품: 전기전자, 집적회로, 건축가재, 의류, 방직 및 직물제품, LCD 등 		

인도

GDP	3 조 6,939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5.48% (2024 년 11 월)
실업률	8.5% (2017 년 12 월)	화폐	루피(INR)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53.66%), 건설업(7.74%), 유틸리티(2.46%), 제조업(16.57%), 광업(2.25%), 농업(17.32%) (2016-17 회계연도) * 인도 통계실행부 주요 수출품: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연료, 기타기계류, 기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호주

GDP	1 조 7,790 억 달러 (2024 년 9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1% (2024 년 10 월)
실업률	3.9% (2024 년 11 월)	화폐	호주 달러(AUD)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업: 3.0%, 광업: 6.3%, 제조업: 6.3%, 건설업: 7.9%, 서비스업: 76.5% (2017 년) 주요 수출품: 광물성 연료, 광물, 귀금속류, 육류, 곡류, 무기화학물, 핵반응기계 및 희토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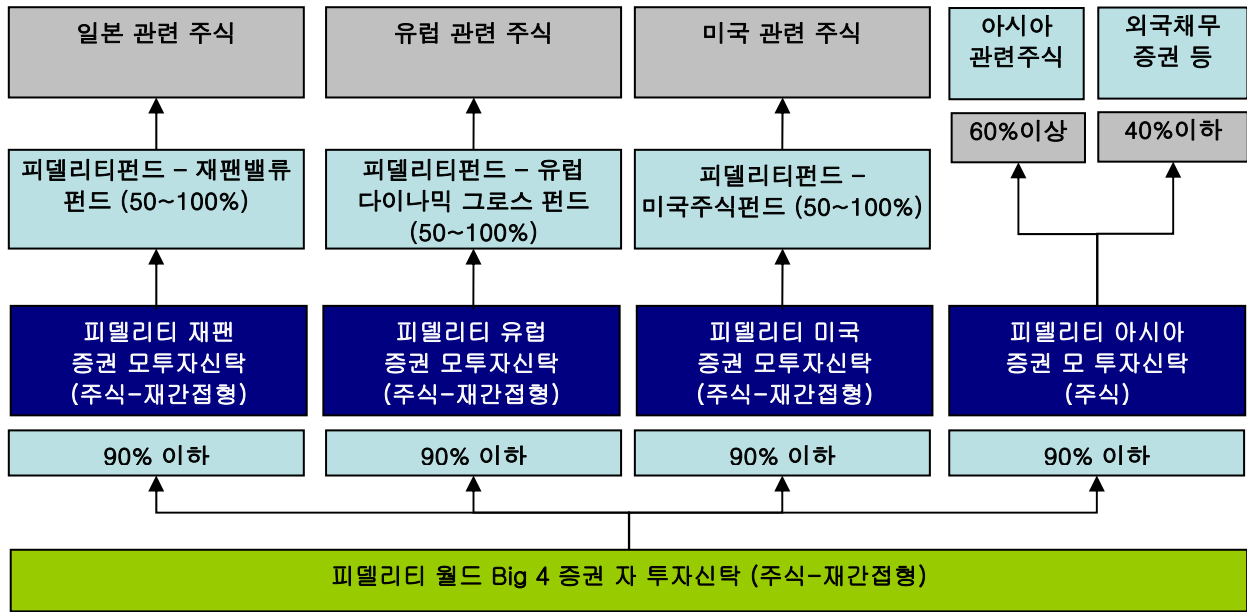
(다)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지역의 투자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부 시장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지역의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규제와 관련된 신흥시장의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는 신흥시장에 적용되는 공통적 주안점에 대한 설명 및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할 대표적인 투자대상 시장 및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시장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위험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며 모든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을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에 피력된 모든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작성일 이후 발생한 시장변동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흥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통적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관련위험 및 통화정책변경** - 통화가치절상은 선별된 섹터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현금흐름의 제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 몇몇 신흥 시장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 뉴프런티어 국가에 속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자본금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은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는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외국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요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구 분	주요 투자위험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요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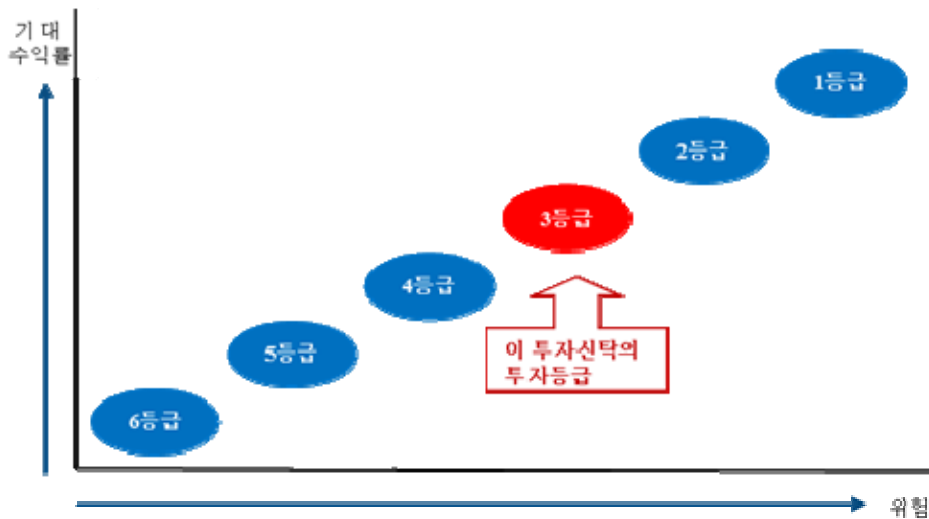
구 분	주요 투자위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일부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제상 과세 위험	모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또는 심천거래소 등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 당국의 과세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적격외국인투자자(QFI) 관련 과세정책 또는 모투자신탁의 중국 본토 관련 증권 투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현행 중국 세법, 관련 규정 및 관행은 중국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조세채무가 증가되면 이는 모투자신탁의 가치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 관련 위험	중국의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적격외국인투자자(QFI) 지위를 취득한 기관을 통해서 중국 A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 QFI 관련 규정은 중국 A 주식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모투자신탁의 중국 내 투자 성과 및 투자목적 달성 여부는 이러한 QFI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투자제한, 최소투자보유기간 및 원금과 수익의 본국 송금 요건 등에 대한 규제들을 포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QFI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제한된 투자기회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을 충분히 실행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결정에 의해 QFI 제도 및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모투자신탁의 중국 내 투자 관련 기관의 QFI 자격이 제한 또는 취소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중국내 투자가 곤란하거나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수단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은 적격외국인투자자(QFI) 자격, 후강통 제도 및 기타 적격 수단 등, 현행 중국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단을 통하여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투자수단은 중국 당국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 위험성은 모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요 투자위험
-----	---------

구 분	주요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된 후 3년(최초 설정 이후 3 번째 결산시점)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시장위험등급 지표표(97.5% VaR 모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등급 지표표(97.5% VaR 모형*)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대상기간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22.49%로서,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최근 위험등급 변경 및 사유]

변경일	위험등급		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2025.03.07	수익률 변동성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3 등급	수익률 변동성 기준 (최대손실예상액) 3 등급	2024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반영하여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반영

한편,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4 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보통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5 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낮은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매우 낮은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익증권: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PRS) 수익증권: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수익증권: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R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수익증권 :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수익증권: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 및 자금납입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 D & D+1 & D+2 \\ & & \\ \text{자금납입} & &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 이전)} & & \text{(D+2 기준가 적용)} \end{array}$ </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c} D & D+1 & D+2 & D+3 \\ & & & \\ \text{자금납입} & & &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 경과후} & & & \text{(D+3 기준가 적용)} \end{array}$ </p>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은 1940년 미투자자문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1933년 미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은 미국법, 적용법률, 규칙 또는 해석상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미합중국 또는 그의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 8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9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p> <div style="text-align: center;"> <p>D D+2 D+7</p> <p>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p> <p>(5시 이전) 적용 지급</p> </div>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p> <div style="text-align: center;"> <p>D D+3 D+8</p> <p>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p> <p>(5시 경과후) 적용 지급</p> </div>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O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환매연기사유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수익자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② 수익자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③ 수익자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④ 수익자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관련 유의사항

- (가)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 (나)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다)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구분	내용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평가 시점 이전에 입수할 수 있는 일부 해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당일의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수수료 ^{2) 3) 4)}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1.2 % 이하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5% 이하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5)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하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됨. 다만,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상기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해당 후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함.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주4)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음**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가 부과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보수 및 비용]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025년11월말 기준)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1000	1.0000	0.0400	0.0220	1.1620	0.0514	1.1620	0.8700	2.0409	0.023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1000	0.3700	0.0400	0.0220	0.5320	0.0517	0.5320	0.5800	1.4112	0.0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 (C1)	0.1000	1.5000	0.0400	0.0220	1.6620	0.0000	1.6620	1.2100	2.489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 (C2)	0.1000	1.4000	0.0400	0.0220	1.5620	0.0000	1.5620		2.389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 (C3)	0.1000	1.3000	0.0400	0.0220	1.4620	0.0452	1.4620		2.3347	0.01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 (C4)	0.1000	1.2000	0.0400	0.0220	1.3620	0.0493	1.3620		2.2388	0.0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 (C5)	0.1000	1.1000	0.0400	0.0220	1.2620	0.0518	1.2620		2.1413	0.0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1000	0.5000	0.0400	0.0220	0.6620	0.0517	0.6620	0.7500	1.5412	0.0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 (CG)	0.1000	0.4500	0.0400	0.0220	0.6120	0.0000	0.6120		1.439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1000	0.0000	0.0400	0.0220	0.1620	0.0526	0.1620		1.0421	0.02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 (CP)	0.1000	0.5000	0.0400	0.0220	0.6620	0.0516	0.6620		1.5411	0.02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 금 (CP-e)	0.1000	0.2600	0.0400	0.0220	0.4220	0.0516	0.4220		1.3011	0.02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 (PRS)	0.1000	0.6000	0.0400	0.0220	0.7620	0.0517	0.7620		1.6412	0.02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 (PRS-e)	0.1000	0.3000	0.0400	0.0220	0.4620	0.0517	0.4620		1.3412	0.023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1000	0.2500	0.0400	0.0220	0.4120	0.0517	0.4120		1.2912	0.0235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 인연금 (S-PRS)	0.1000	0.1800	0.0400	0.0220	0.3420	0.0517	0.3420		1.2212	0.023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고 액 (S-I)	0.1000	0.0300	0.0400	0.0220	0.1920	0.0000	0.1920		1.0195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I)	0.1000	0.1000	0.0400	0.0220	0.2620	0.0000	0.2620		1.0895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F)	0.1000	0.0500	0.0400	0.0220	0.2120	0.0000	0.2120		1.0395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계열 사자금 (N)	0.1000	0.0000	0.0400	0.0220	0.1620	0.0000	0.1620		0.9895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보관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제외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종류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는 기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기 기타비용은 모두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 안분한 값과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14,675,809
금융비용	0
※ 증권 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콜 중개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대차 중개수수료 등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한 기타비용 (있는 경우)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두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0.8275%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두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2025년 11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총보수	0.0000	
기타 비용	0.0791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0791	
합성총보수비율	0.0791	
증권거래비용	0.094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보관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제외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333,975,431
금융비용	0
※ 증권 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콜 중개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대차 중개수수료 등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총보수	0.0000	
기타 비용	0.0461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0461	
합성총보수비율	1.1461	
증권거래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보관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제외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0
금융비용	0
※ 증권 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콜 중개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대차 중개수수료 등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총보수	0.0000	
기타 비용	0.0192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0192	
합성총보수비율	1.1192	
증권거래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보관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제외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0
금융비용	0
※ 증권 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콜 중개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대차 중개수수료 등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총보수	0.0000	
기타 비용	0.0419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0419	
합성총보수비율	1.1519	
증권거래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보관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제외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0
금융비용	0
※ 증권 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콜 중개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대차 중개수수료 등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1%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 시 예상 비용]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말 기준, 단위: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360	490	769	1,5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325	542	770	1,261	2,718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161	221	350	73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94	345	503	845	1,8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	338	504	822	1,7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55	512	776	1,308	2,8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	139	214	375	8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58	324	498	873	1,9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	129	198	347	7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48	302	465	815	1,8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	34	52	92	2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07	219	337	590	1,3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	139	214	375	8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58	324	498	873	1,9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9	136	239	544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	273	420	737	1,6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160	246	432	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	345	530	929	2,1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62	5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7	282	433	760	1,72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7	133	233	53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	271	417	731	1,66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	72	110	194	4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5	257	395	692	1,5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0	62	109	2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	214	329	577	1,3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	55	85	148	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9	352	617	1,4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	45	68	120	2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7	218	336	589	1,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	34	52	92	2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	208	320	560	1,276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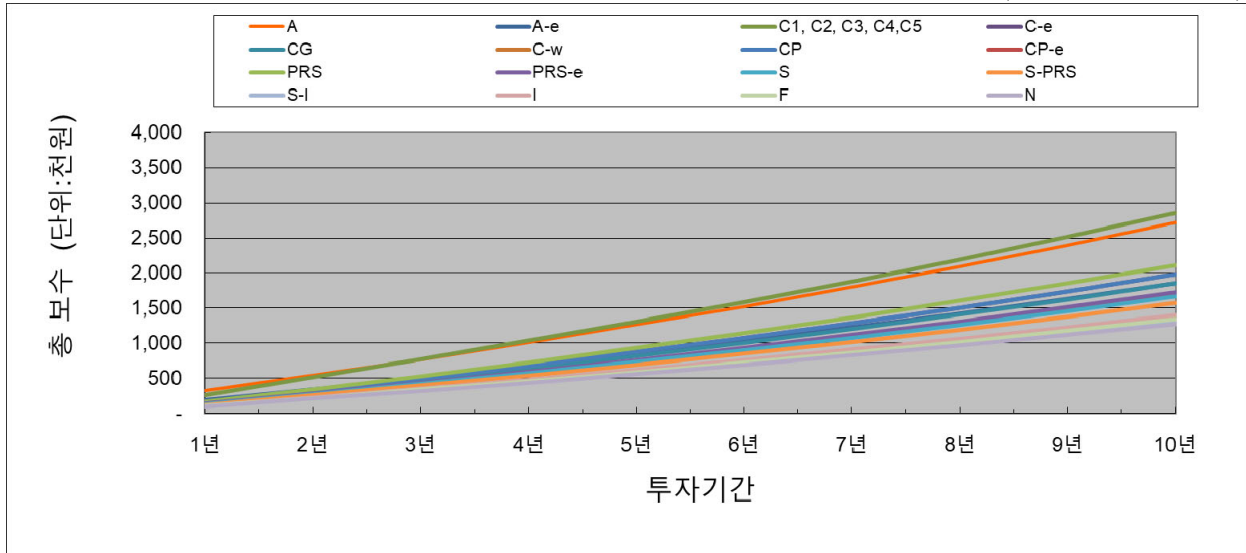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및 수수료선취-온라인 (A-e)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2025년 11월말 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및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약 2년 10개월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및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약 3년 4개월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 제14조 제①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제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두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두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직접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두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두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한(해외주식 등->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신탁입니다.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차감하는 조치는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되기 이전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시적 해석이 없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제2부. 14. 나. 과세 부분)의 “외국상장주식”이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뜻합니다. 한편, “매매·평가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 주식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매매·평가 손익은 제외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전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별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이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지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환헤지 거래를 수행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통하여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9기, 제18기 및 제17기의 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일)

요약재무정보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51231	20241231	20231231
I. 운용자산	60,383,700,949	58,601,128,377	68,733,365,357
증권	59,860,286,230	58,011,358,541	68,050,865,908
현금 및 예치금	523,414,719	589,769,836	682,499,449
II. 기타자산	321,225,791	583,976,800	710,299,929
자산총계	60,704,926,740	59,185,105,177	69,443,665,286

요약재무정보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51231	20241231	20231231
II. 기타부채	334,391,657	612,498,345	777,065,854
부채총계	334,391,657	612,498,345	777,065,854
I. 원본	26,934,796,809	29,383,012,758	37,531,944,427
II. 수익조정금	-2,556,669,646	-8,007,873,190	-6,318,397,320
III. 이익잉여금	35,992,407,920	37,197,467,264	37,453,052,325
자본총계	60,370,535,083	58,572,606,832	68,666,599,432
I. 운용수익	7,419,635,437	6,670,413,397	9,478,056,744
이자수익	13,425,636	19,475,303	21,869,337
배당수익	443,804,603	584,423,300	798,990,529
매매/평가차익(손)	6,962,405,198	6,066,514,794	8,657,196,878
II. 운용비용	421,240,210	497,270,578	596,989,327
관련회사보수	418,136,950	494,028,008	593,768,497
기타비용	3,103,260	3,242,570	3,220,830
III. 당기 순이익	6,998,395,227	6,173,142,819	8,881,067,417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며,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증권대여 수익은 없습니다.

※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증권차입 비용은 없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일, 주)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 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3,131,914	225,672,284,701	52,277,492	343,379,940,282	320,438,641,126	107.16	32.09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였습니다.

* 모자형의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대해 각각 기재하거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일)

구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 비용 비율(B/A)
주식	569,011,768,732	308,426,841	0.05	481,564,831,915	232,199,892	0.05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43,746,656,130	25,548,590	0.06	92,077,150,317	94,383,931	0.10
장내파생거래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합 계	612,758,424,862	333,975,431	0.05	573,641,982,232	326,583,823	0.06

*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 거래비용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천)

◇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42,534,996	42,534,996	5,809,728	10,775,315	13,416,806	25,149,093	34,927,919	28,161,219
20240101 - 20241231	34,927,919	34,927,919	9,813,296	19,713,667	17,379,250	35,673,256	27,361,964	18,968,329
20250101 - 20251231	27,361,964	27,361,964	4,351,816	9,789,946	6,597,576	14,820,232	25,116,204	22,331,67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1,360,673	1,360,673	155,688	272,081	342,742	601,494	1,173,619	1,031,260
20240101 - 20241231	1,173,619	1,173,619	4,596	8,390	1,178,215	2,141,992	0	-959,983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17,630,679	17,630,679	1,248,864	2,227,161	7,327,963	13,316,279	11,551,580	6,541,561
20240101 - 20241231	11,551,580	11,551,580	1,846,906	3,689,938	6,238,017	12,628,406	7,160,469	2,613,111
20230101 - 20231231	17,630,679	17,630,679	1,248,864	2,227,161	7,327,963	13,316,279	11,551,580	6,541,56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409,390	409,390	14,217	24,803	252,388	435,729	171,219	-1,536
20240101	171,219	171,219	1,166,047	2,134,871	1,337,266	2,457,292	0	-151,202

- 2024123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3)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131,806	131,806	200,381	348,639	180,510	317,697	151,677	162,748
20240101 - 20241231	151,677	151,677	1,329,910	2,460,938	1,480,534	2,766,802	1,052	-154,187
20250101 - 20251231	1,052	1,052	51	100	1,103	2,266	0	-1,11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247,485	247,485	79,402	137,720	119,300	212,511	207,588	172,694
20240101 - 20241231	207,588	207,588	1,456,691	2,740,187	1,564,422	2,929,277	99,856	18,497
20250101 - 20251231	99,856	99,856	4,931	10,566	101,299	208,396	3,488	-97,97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793,543	793,543	77,989	140,719	238,885	429,664	632,647	504,598
20240101 - 20241231	632,647	632,647	1,679,759	3,183,462	440,085	876,354	1,872,321	2,939,755
20250101 - 20251231	1,872,321	1,872,321	238,834	504,098	247,454	535,533	1,863,700	1,840,8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4,862,509	4,862,509	567,932	1,050,585	599,871	1,114,097	4,830,569	4,798,997
20240101 - 20241231	4,830,569	4,830,569	360,644	743,394	1,140,029	2,389,899	4,051,184	3,184,065

20250101 - 20251231	4,051,184	4,051,184	287,922	637,582	784,609	1,740,596	3,567,343	2,975,391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2,888,440	2,888,440	495,394	914,613	819,732	1,517,406	2,564,102	2,285,647
20240101 - 20241231	2,564,102	2,564,102	305,174	633,452	712,385	1,469,761	2,161,833	1,737,373
20250101 - 20251231	2,161,833	2,161,833	295,491	653,227	424,182	949,635	2,043,318	1,886,94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2,266,604	2,266,604	381,436	704,378	640,091	1,186,418	2,007,949	1,784,565
20240101 - 20241231	2,007,949	2,007,949	379,087	787,155	522,855	1,087,887	1,864,181	1,707,216
20250101 - 20251231	1,864,181	1,864,181	329,886	733,711	421,573	938,012	1,778,253	1,672,08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364,179	364,179	366,740	683,212	465,334	876,884	265,585	170,507
20240101 - 20241231	265,585	265,585	87,088	181,755	169,569	359,363	185,457	92,575
20250101 - 20251231	185,457	185,457	798,384	1,871,370	136,113	316,231	849,322	1,743,995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2,122,507	2,122,507	198,911	366,450	482,999	900,768	1,838,419	1,588,189
20240101 -	1,838,419	1,838,419	153,885	320,272	418,615	876,626	1,581,025	1,296,351

20241231								
20250101 - 20251231	1,581,025	1,581,025	100,999	222,385	269,214	595,805	1,421,938	1,226,99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PR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204,144	204,144	9,382	13,725	30,745	44,509	182,781	173,361
20240101 - 20241231	182,781	182,781	11,662	19,208	13,879	22,890	180,564	179,099
20250101 - 20251231	180,564	180,564	14,566	24,993	48,208	85,397	147,011	120,31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PRS-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389,417	389,417	169,629	245,978	92,741	134,955	466,305	500,440
20240101 - 20241231	466,305	466,305	78,516	125,347	138,650	222,640	407,687	371,325
20250101 - 20251231	407,687	407,687	67,667	119,560	69,850	124,677	407,745	406,29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R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865,153	865,153	229,798	426,424	242,018	452,611	852,934	838,967
20240101 - 20241231	852,934	852,934	77,737	162,212	221,941	464,931	713,419	559,362
20250101 - 20251231	713,419	713,419	44,720	98,593	156,835	354,809	606,039	467,27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1 - 20231231	10,596,675	10,596,675	2,029,483	3,160,330	1,991,187	3,095,454	10,634,971	10,661,551
20240101	10,634,971	10,634,971	1,689,281	2,938,926	3,262,714	5,701,478	9,103,965	7,941,782

- 20241231								
20250101								
- 20251231	9,103,965	9,103,965	1,359,617	2,550,621	2,328,925	4,425,640	8,188,310	7,324,628

주) 기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50101 - 20251231	12,846,598 / 27,221,552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4,942,229 / 9,580,603
20250101 - 20251231	10,176,115 / 21,516,87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50101 - 20251231	5,759,601 / 12,200,6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2,352,472 / 4,597,106
20250101 - 20251231	1,594,698 / 3,398,955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7,336,119 / 14,285,844
20250101 - 20251231	9,127,449 / 19,387,97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PRS)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50101 - 20251231	89,174 / 150,32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PRS-e)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1,516,469 / 2,312,217
20250101 - 20251231	2,240,274 / 3,726,06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RS)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4,689,482 / 9,146,037
20250101 - 20251231	4,734,153 / 10,071,76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e)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240101 - 20241231	42,427,643 / 69,363,674
20250101 - 20251231	53,652,993 / 95,682,06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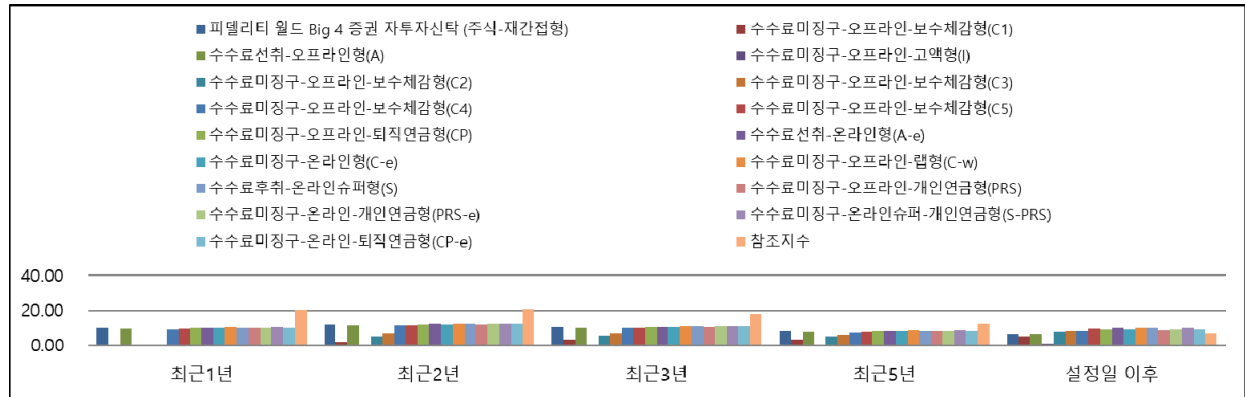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과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 년 2024.12.01 ~ 2025.11.30	최근 2 년 2023.12.01 ~ 2025.11.30	최근 3 년 2022.12.01 ~ 2025.11.30	최근 5 년 2020.12.01 ~ 2025.11.30	설정일 이후 2007.05.17 ~ 2025.11.30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95	12.11	10.53	7.92	6.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1)	0.00	1.63	3.25	3.28	4.6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9.47	11.64	10.10	7.55	6.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형(I)	0.00	0.00	0.00	0.00	0.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2)	0.00	4.67	5.33	4.56	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3)	0.50	6.81	6.79	5.47	8.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4)	9.25	11.42	9.88	7.34	8.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5)	9.36	11.53	9.99	7.44	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형(CP)	10.00	12.19	10.64	8.08	9.3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10.14	12.33	10.78	8.21	10.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0.00	12.19	10.64	8.08	8.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 (C-w)	10.54	12.74	11.18	8.61	10.2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10.27	12.46	10.91	8.34	10.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형(PRS)	9.90	12.08	10.53	7.97	8.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형(PRS-e)	10.22	12.41	10.86	8.29	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 인연금형(S-PRS)	10.35	12.54	10.99	8.42	10.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 금형(CP-e)	10.26	12.45	10.90	8.33	9.21
참조지수	20.46	20.90	17.72	12.36	6.83

연도	최근 1년 2024.12.01 ~ 2025.11.30	최근 2년 2023.12.01 ~ 2025.11.30	최근 3년 2022.12.01 ~ 2025.11.30	최근 5년 2020.12.01 ~ 2025.11.30	설정일 이후 2007.05.17 ~ 2025.11.30
수익률변동성(%)	11.52	10.64	10.59	11.76	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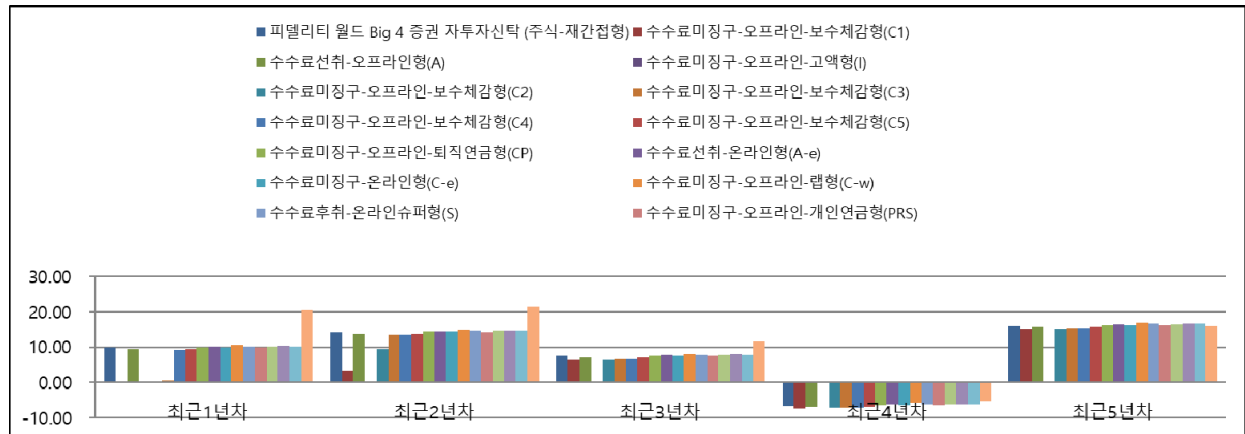
- 1)참조지수 : 25% S&P 500 Index + 25% MSCI Europe Index (EUR) + 25% TOPIX + 25%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x Korea (hedged to the KRW)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습니다.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 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2024.12.01 ~ 2025.11.30	최근 2년차 2023.12.01 ~ 2024.11.30	최근 3년차 2022.12.01 ~ 2023.11.30	최근 4년차 2021.12.01 ~ 2022.11.30	최근 5년차 2020.12.01 ~ 2021.11.30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95	14.31	7.44	-6.53	15.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1)	0.00	3.30	6.55	-7.29	15.1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9.47	13.85	7.08	-6.83	15.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형(I)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2)	0.00	9.56	6.66	-7.19	15.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3)	0.50	13.51	6.76	-7.10	15.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4)	9.25	13.62	6.87	-7.01	15.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채감형(C5)	9.36	13.74	6.97	-6.92	15.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형(CP)	10.00	14.41	7.60	-6.36	16.2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10.14	14.56	7.74	-6.24	16.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0.00	14.41	7.60	-6.36	16.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 (C-w)	10.54	14.98	8.13	-5.90	16.8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10.27	14.70	7.87	-6.13	16.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9.90	14.30	7.50	-6.46	16.16

연도	최근 1년차 2024.12.01 ~ 2025.11.30	최근 2년차 2023.12.01 ~ 2024.11.30	최근 3년차 2022.12.01 ~ 2023.11.30	최근 4년차 2021.12.01 ~ 2022.11.30	최근 5년차 2020.12.01 ~ 2021.11.30
연금형(PRS)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PRS-e)	10.22	14.64	7.81	-6.18	16.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RS)	10.35	14.78	7.94	-6.06	16.6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e)	10.26	14.68	7.86	-6.14	16.55
참조지수	20.46	21.33	11.60	-5.30	15.94



- 1) 참조지수 : 25% S&P 500 Index + 25% MSCI Europe Index (EUR) + 25% TOPIX + 25%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x Korea (hedged to the KRW)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25년 11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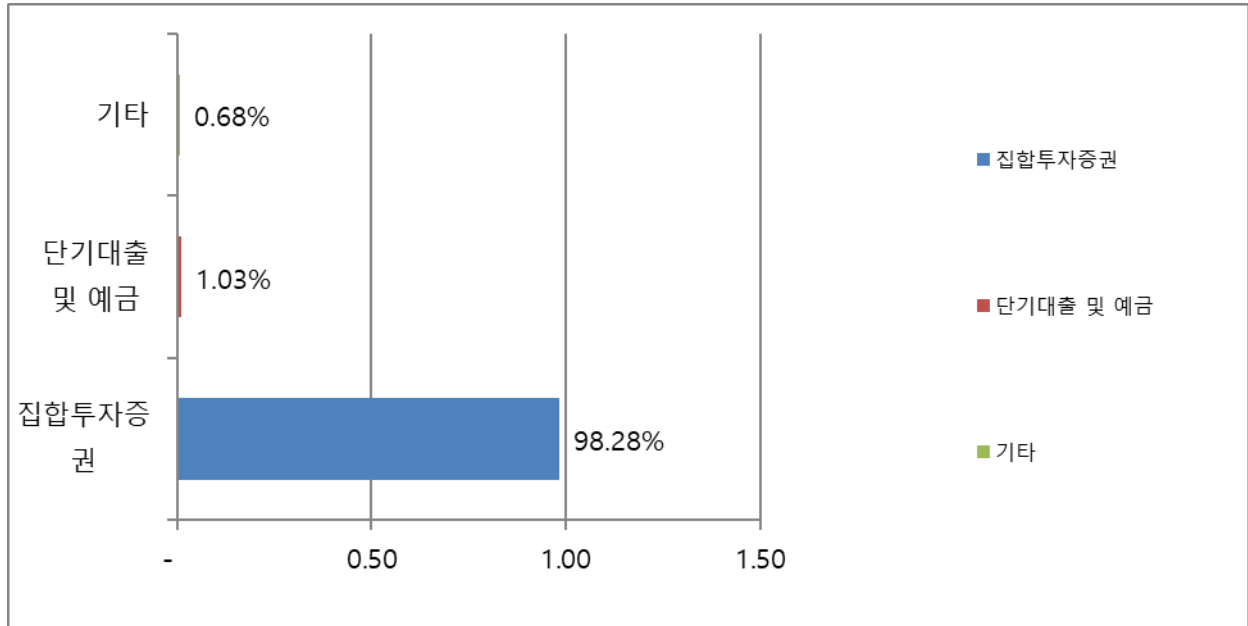
2025년 11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한국 원	0	0	0	60,230	0	0	0	0	0	634	419	61,283
	(0.00)	(0.00)	(0.00)	(98.28)	(0.00)	(0.00)	(0.00)	(0.00)	(0.00)	(1.03)	(0.68)	(100.00)
합계	0	0	0	60,230	0	0	0	0	0	634	419	61,283
	(0.00)	(0.00)	(0.00)	(98.28)	(0.00)	(0.00)	(0.00)	(0.00)	(0.00)	(1.03)	(0.68)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1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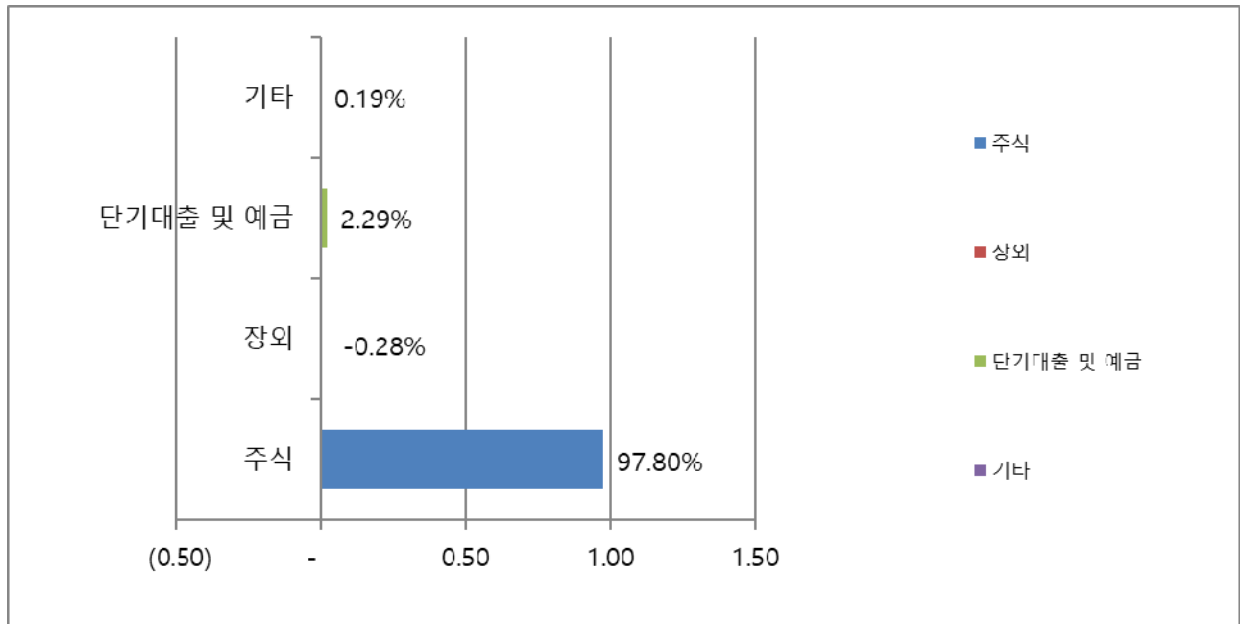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뉴질랜드 달러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싱가포르 달러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영국 파운드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위안	0	0	0	0	0	0	0	0	0	330	0	33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1)	(0.00)	(0.11)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979	563	1,54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2)	(0.19)	(0.51)
태국 바트	8,304	0	0	0	0	0	0	0	0	0	0	8,304
	(2.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74)
유로	11,103	0	0	0	0	0	0	0	0	2	0	11,105
	(3.6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66)
대만 달러	17,431	0	0	0	0	0	0	0	0	0	0	17,431
	(5.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75)
호주 달러	23,121	0	0	0	0	0	0	0	0	0	0	23,121
	(7.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62)
인도 루피	40,568	0	0	0	0	0	0	0	0	5	0	40,572
	(13.3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37)
미국 달러	83,877	0	0	0	0	-841	0	0	0	5,635	0	88,671
	(27.65)	(0.00)	(0.00)	(0.00)	(0.00)	(-0.28)	(0.00)	(0.00)	(0.00)	(1.86)	(0.00)	(29.23)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홍콩 달러	112,281	0	0	0	0	0	0	0	0	0	0	112,281
	(37.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01)
합계	296,686	0	0	0	0	-841	0	0	0	6,951	563	303,359
	(97.80)	(0.00)	(0.00)	(0.00)	(0.00)	(-0.28)	(0.00)	(0.00)	(0.00)	(2.29)	(0.19)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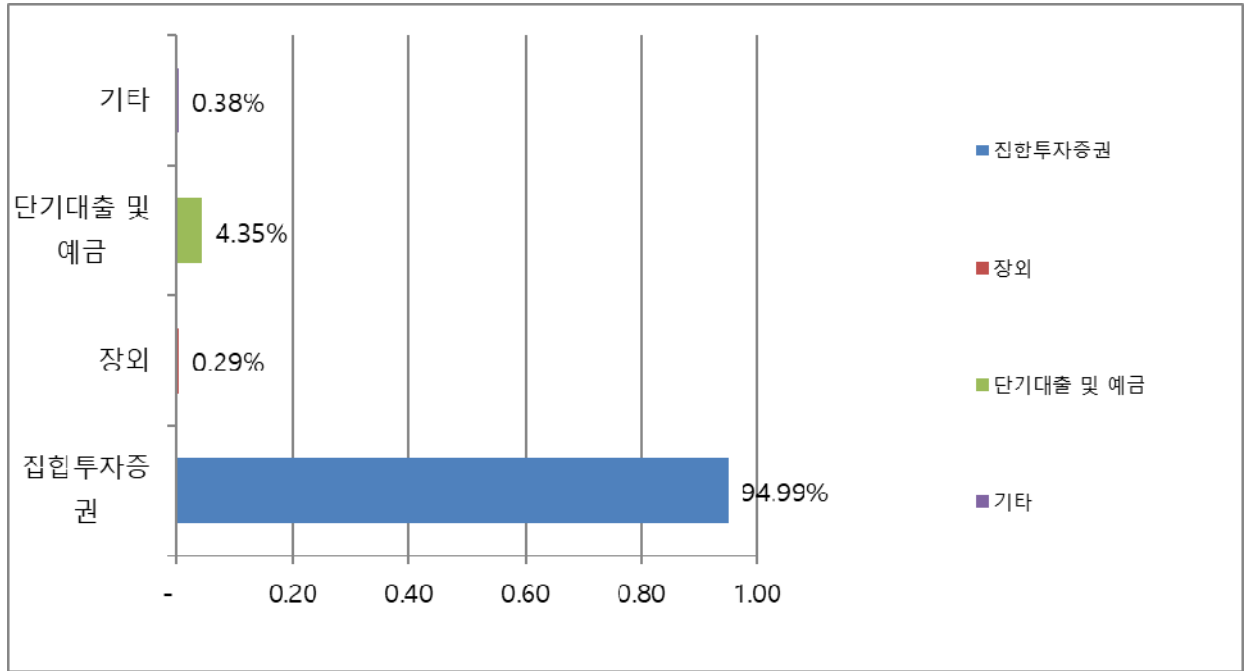


(단위: 백만)

◇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 달러	0	0	0	0	0	191	0	0	0	37	0	228
	(0.00)	(0.00)	(0.00)	(0.00)	(0.00)	(0.29)	(0.00)	(0.00)	(0.00)	(0.06)	(0.00)	(0.35)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2,826	248	3,0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29)	(0.38)	(4.66)
일본 엔	0	0	0	62,596	0	0	0	0	0	1	0	62,597
	(0.00)	(0.00)	(0.00)	(94.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4.99)
합계	0	0	0	62,596	0	191	0	0	0	2,864	248	65,898
	(0.00)	(0.00)	(0.00)	(94.99)	(0.00)	(0.29)	(0.00)	(0.00)	(0.00)	(4.35)	(0.38)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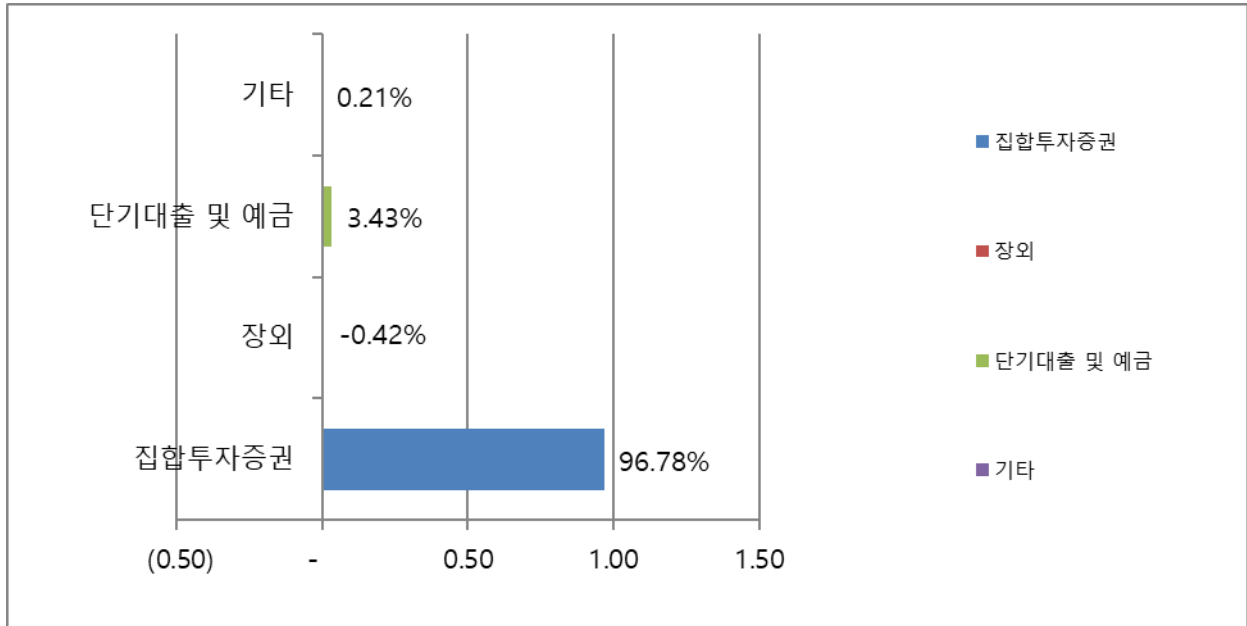


(단위: 백만)

◇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미국 달러	0	0	0	0	0	-176	0	0	0	58	0	-118
	(0.00)	(0.00)	(0.00)	(0.00)	(0.00)	(-0.42)	(0.00)	(0.00)	(0.00)	(0.14)	(0.00)	(-0.28)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1,390	88	1,47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8)	(0.21)	(3.49)
유로	0	0	0	40,960	0	0	0	0	0	2	0	40,961
	(0.00)	(0.00)	(0.00)	(96.7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6.79)
합계	0	0	0	40,960	0	-176	0	0	0	1,450	88	42,322
	(0.00)	(0.00)	(0.00)	(96.78)	(0.00)	(-0.42)	(0.00)	(0.00)	(0.00)	(3.43)	(0.21)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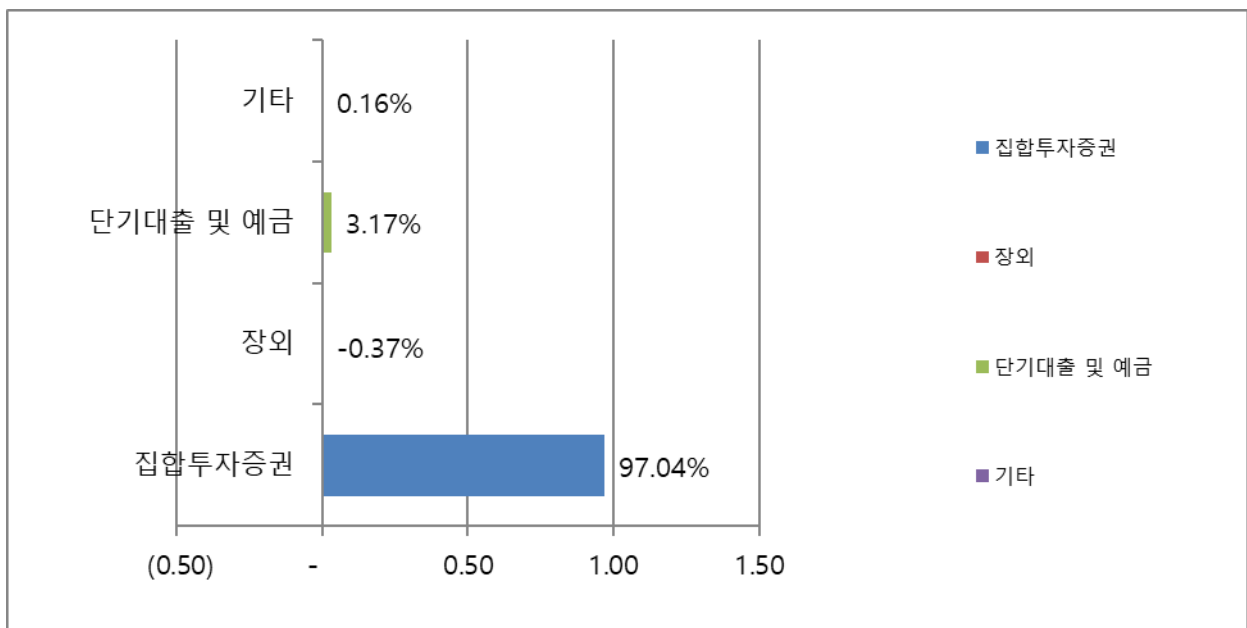


(단위: 백만)

◇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2,497	127	2,6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8)	(0.16)	(3.24)
미국 달러	0	0	0	78,601	0	-296	0	0	0	72	0	78,377
	(0.00)	(0.00)	(0.00)	(97.04)	(0.00)	(-0.37)	(0.00)	(0.00)	(0.00)	(0.09)	(0.00)	(96.76)
합계	0	0	0	78,601	0	-296	0	0	0	2,568	127	81,001
	(0.00)	(0.00)	(0.00)	(97.04)	(0.00)	(-0.37)	(0.00)	(0.00)	(0.00)	(3.17)	(0.16)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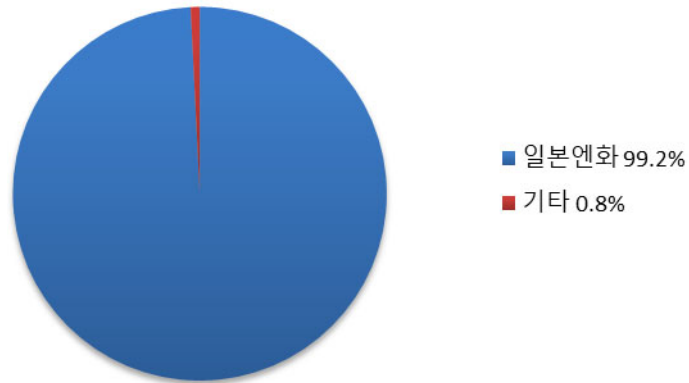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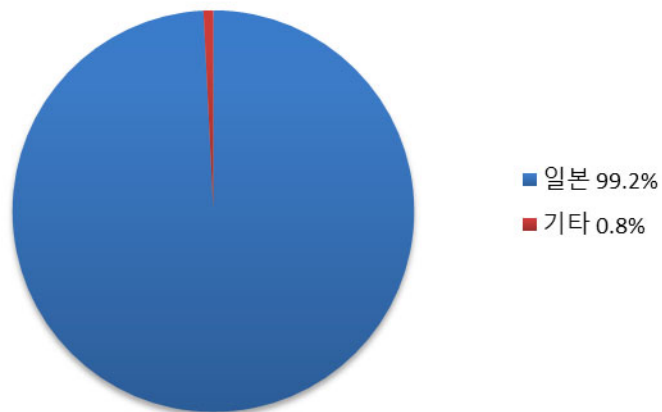
피델리티펀드 - 재팬밸류펀드

(2025년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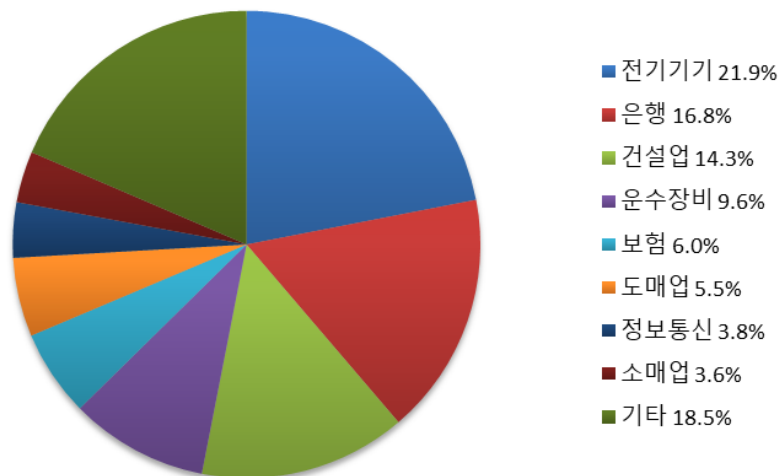
통화별 비중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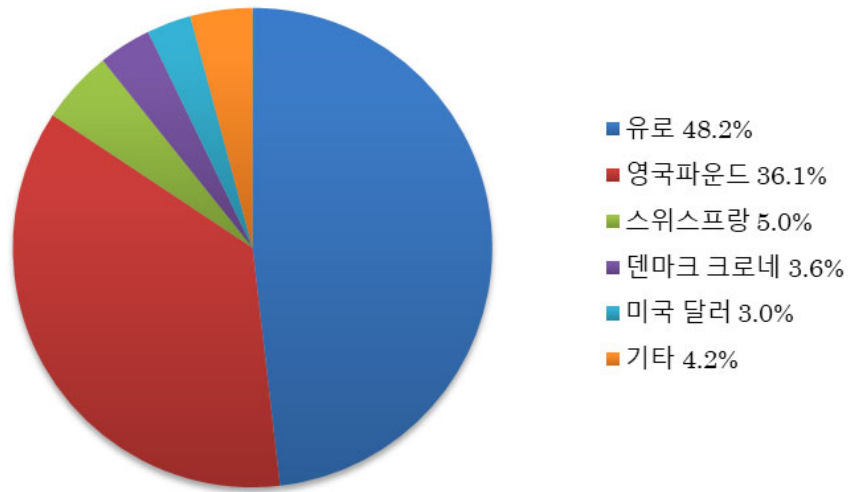
업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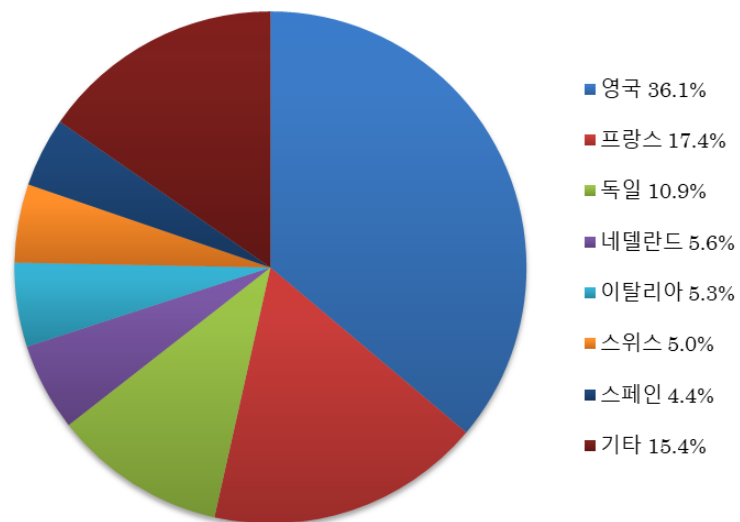
피델리티펀드 - 유럽다이나믹그로스펀드

(2025년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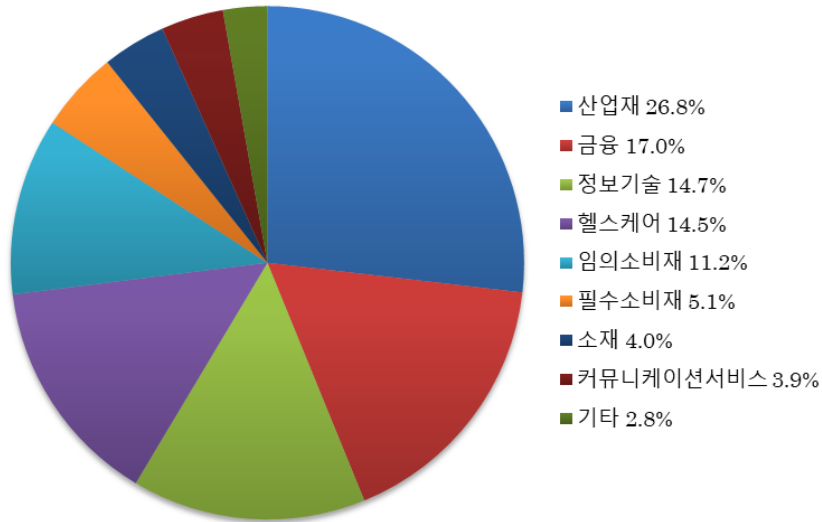
통화별 비중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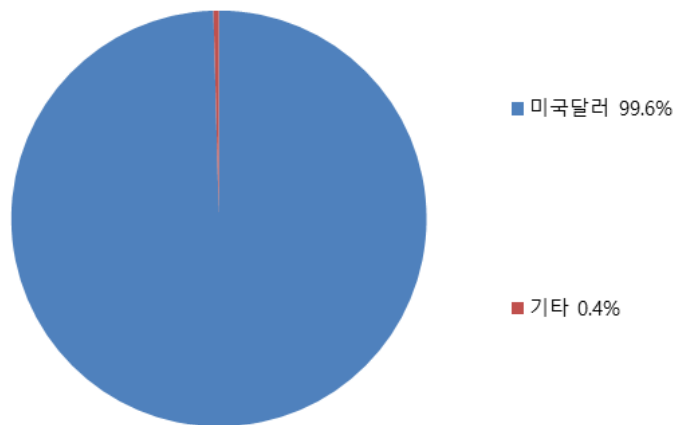
업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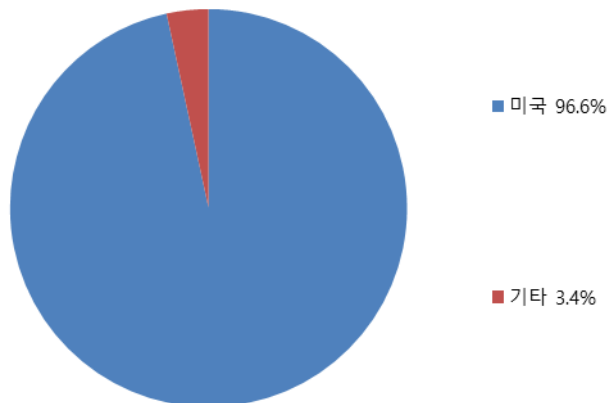
피델리티펀드 - 미국주식펀드

(2025년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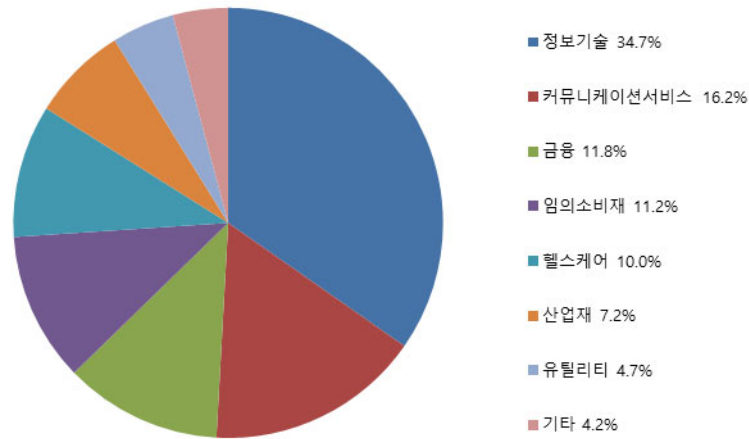
통화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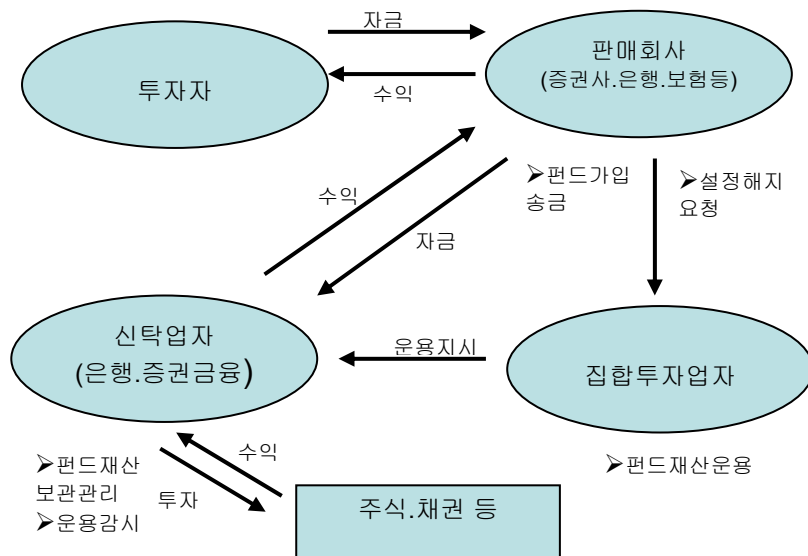
지역별 비중



업종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04520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 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 사 연 혁	2002 년 8 월 설립되었으며(설립 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p>2003 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 년 12 월 8 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 년 12 월 10 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년 2 월 4 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5 년 10 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50 억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가 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 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p>
--	--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의무 및 책임

-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2024.12.31	2023.12.31	항목	2024.12.31	2023.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1,860	1,655	영업수익	18,709	18,168
예치금	24,714	22,359	영업비용	15,621	15,6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53	1,368	영업이익	3,088	2,544
기타자산	2,411	2,338			
유형자산	322	369	영업외수익	-	-
사용권자산	921	1,382	영업외비용	-	2
이연법인세자산	382	419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3,088	2,542
자산총계	31,963	29,889			
예수부채	38	17	법인세비용	623	509
당기법인세부채	352	330	당기순이익	2,465	2,033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기타부채	2,568	2,418			
리스부채	977	1,454	세후기타포괄손익	-	-
부채총계	3,934	4,220	당기총포괄이익	2,465	2,033
자본금	15,000	15,000			
적립금	1,268	1,256			
미처분이익잉여금	11,760	9,413			
자본총계	28,029	25,669			
부채와 자본총계	31,963	29,889			

주)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25년 11월말 기준,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 구종류	종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1,359	0	0	35,129	0	0	0	0	36,48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환헤지 거래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제외)를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90년 설립되어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L의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 거래가 실시될 경우, 환헤지 거래의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81년 설립되어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L Limited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가) 외화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관련업무의 위탁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90년 12월 31일
회사주소	8 Marina View, # 27-01,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의 위탁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주소: 18/F, Three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홈페이지: www.fidelity.com.hk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3)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규준수, 감독 및 위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계열사, 특히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FIMHK”),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FII”)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FAHL”)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FIMHK은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FII는 영국 금융청으로부터 각각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4) 해외업무위탁회사 개요

해외업무위탁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18/F, Three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해외업무위탁회사명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설립일	1979년 9월 13일
회사주소	Beech Gate, Millfield Lane, Lower Kingswood, TADWORTH, SURREY, KT20 6RP, United Kingdom 전화번호:(44) 1732 361144 팩스번호:(44) 1732 83886

해외업무위탁회사명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설립일	2008년 12월 23일
회사주소	8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나. 기타 업무의 위탁회사

(1) 파일서버 시스템 보관, 관리, 유지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소재 파일 서버의 장소를 아시아 지역 본사인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의 홍콩 브랜치에 이전하고 관련한 파일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 발행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작성, 제출, 보고하는 일괄신고서(등록신청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발행실적 보고서, 기타 보고서, 양식 등의 작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문서들을 작성, 제출, 보고하거나 공시하는 일련의 업무를 당사 계열사인, FIL Technology (Dalian) Limited에 위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위탁후에도 집합투자업자의 해당 업무 담당자는 위탁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와 같이 위탁하여 작성 및 보고한 문서의 내용 및 제반 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각각 서명하여 제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는 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신탁업자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2층 전화번호: (02) 2004-0000 홈페이지: www.hsbc.co.kr

(2)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라)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마)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바) 증권 상환금의 수입
- (사)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당해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자산을 제외함)
- (나)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의무 및 책임

(가) 신탁업자의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코스콤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12층 전화번호: (02) 3771-9800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주)코스콤펀드서비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다)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3)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전화번호: (02) 399-335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전화번호: (02) 3215-145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NICE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4층 전화번호: (02) 398-3900 홈페이지: https://www.nicepni.com

(2) 주요 업무

- (가)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 (나)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 (다) 채권지수 서비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⑥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 ⑦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②, ③, 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이하 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라)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마) 수익자총회의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 91 조 및 법 시행령 제 95 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④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위 ③ 및 ④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계약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두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단,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거래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p>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p> <p>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와 종류 • 유동성 • 거래 효율성 •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 중개회사의 신용도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전환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호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